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시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괄 박한선실장

발행인 장영태 원장

■ 발행처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IMO,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서 채택 및 실무지침 회람서 개발 중

☑ 선박 허위등록을 통한 IMO 등록번호 허위 취득 등 불법 해상 활동 문제 속출됨 a)b)c)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사에 따르면, IMO에 등록된 선박 10여 척이 대북 제재 회피활동에 연루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최근 다양한 국적의 깃발을 달고 운항하는 선박들이 포착되었고, 이 선박들은 불법 환적뿐만 아니라 직접 북한 남포항을 입항한 바 있음
 - 실제 다수의 국가가 비용 절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유로 선주가 소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 국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 지적된 선박 중 5척은 시에라리온(Sierra Leone) 국적을 이용하고 있었고 중국, 베트남, 토고 등 여러 국 적 선박이 발견되었음
 - 이들 선박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본사의 국적은 중국 국적의 해운사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 외에 인도네 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하여 IMO는 서류를 위조해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아예 제3국의 해양 당국에 알리지 않고 선박을 허위등록하여 등록번호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함
 - 또한 IMO의 규제 관련 조치도 중요하지만 선박 등록에 관한 제3국의 감독 의무 및 불법 활동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강조함

〈그림 1〉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지정 권고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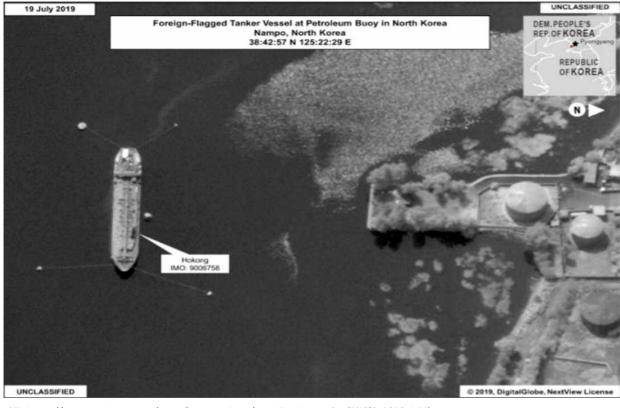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ttee

44. The Panel recommends the designation of the following vessels for violation of paragraph 5 of resolution 2397 (2017):

- Bonvoy 3 (IMO No. 8978784), flag unknown
- Diamond 8 (IMO No. 9132612), Sierra Leone-flagged
- Hokong (IMO No. 9006758), formerly Sierra Leone-flagged
- Sen Lin 01 (IMO No.8910378), formerly Sierra Leone-flagged
- Subblic (IMO No. 8126082), formerly Togo-flagged
- Tianyou (IMO No. 8817007), formerly Sierra Leone-flagged
- Unica (IMO No. 8514306), formerly Sierra Leone-flagged
- Viet Tin 01 (IMO No. 8508838), Viet Nam-flagged
- Vifine also known as Tealway FV (IMO No. 9045962), formerly Sierra Leone-flagged
- Yun Hong 8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No. 413459380), Chinese-flagged

자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2020),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p. 24.



〈그림 2〉 시에라리온 선적 '호콩(Hokong)'호의 북한 남포항 입항 사진

자료: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imo-illegal-transfer (검색일: 2020.4.28)

☑ IMO는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고 실무지침 회람 서 또한 개발 중에 있음 ^{d)e)f)}

- ▶ 2019년 12월에 개최된 IMO 총회에서는 허위등록선박 관련 조치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서가 채택됨
 - 이 결의서를 바탕으로 IMO GISIS¹⁾ 모듈 내 선박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등록 등기부)가 구축·운영되면 모든 기국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
 - 각 정부는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자국의 선박 등록에 대한 정보를 IMO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GISIS 내 등록모듈 확대를 위한 IMO 사무국과의 정보전달 절차

(Procedure for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to the Organization on Registries of Ships in the Contact Points Module in)

1. 각국 정부는 선박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공공기관의 명칭과 그 기구가 관리하는 실무사무소의 목록과 함께 선박등록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팩스번호, e-메일을 사무총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¹⁾ GISIS(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IMO 사무국이 운영하는 국제 통합해운정보시스템





- 2. 동 정보에는 선박등록 및 등록증서 견본에 대한 국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전체 정보는 영국 대사관/고위위원회 또는 해당 정부의 상주대표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4. 만약 해당 정부가 영국에 대사관이나 고위 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그 목록은 다른 나라의 대사관/고위 위원회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5. 사무국은 대사, 상근대표, 상근부회 회원 또는 연락관과의 직접 교신을 통해 수령한 정보를 검증하여 이를 수락하기 전에 그 정확성을 확보한다.
- 6. 사무국은 GISIS의 등록 모듈에 대해 확인된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한다.
- 7. 등록부에 관한 모듈에 포함된 정보는 정부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8. 등기소의 명칭 및/또는 연락처에 대한 변경은 상기 제1항부터 제3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또한 IMO에서는 '기국 등록관청은 선박 등록신청을 받을 때 선박의 IMO 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하고, GISIS의 Contact Point 모듈 상의 선박이력기록부(Continuous Synopsis Record) 연락 정보를 입력하고 최신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무지침 회람서도 개발 중에 있음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위한 기국 및 항만국 통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하위등록 근절을 위한 실무지침 회람서가 발행될 예정이므로 자국선박 및 외국적선박에 대한 안전점검및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해상 활동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검사관(기국통제검사관)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 등을 통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현재 코로나로 지연되었지만 향후 진행될 제107차 법률위원회(LEG)에서는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에 대한 정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한 방안, 허위등록선박 공표 절차 등 허위등록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므로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계의 주목이 필요함

이경미 연구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kmlee@kmi.re.kr / 051-797-4644)

- a)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n-sanctions-ships (검색일: 2020.4.27)
- b)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imo-illegal-transfer (검색일: 2020.4.27)
- c)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검색일: 2020.4.27)

참고 자료

- d) IMO, LEG 106/7/1 MEASURES TO PREVENT UNLAWFUL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 FRAUDULENT REGISTRATIO N AND FRAUDULENT REGISTRIES OF SHIPS
- e) IMO, LEG 106/7/2 MEASURES TO PREVENT UNLAWFUL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 FRAUDULENT REGISTRATIO N AND FRAUDULENT REGISTRIES OF SHIPS
- f) IMO, A 31/11 CONSIDERATION OF TH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LEGAL COMMITTEE